

의안번호	2211090
의 퇴 인	신장식의원
회 답 일	2025. 10. 31.
추 계 번호	25B3320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257억원, 2031년 2,075억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조 825억원(연평균 2,165억원) 이상으로 추계됨

○ (국 비) 5,413억원(연평균 1,083억원)

○ (지방비) 5,413억원(연평균 1,083억원)

－ 본 추계는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하고, 추계가 가능한 조문에 대하여 일정 예산의 편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지급> 국가 등의 책무 (안 제3조),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수급권자의 범위 (안 제12조),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안 제16조)	2,257	2,210	2,164	2,119	2,075	10,825	2,165
국비(50%)	1,129	1,105	1,082	1,060	1,038	5,413	1,083
지방비(50%)	1,129	1,105	1,082	1,060	1,038	5,413	1,083

주: 1.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40세 미만의 농어업인으로 가정
 2. 1인당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지급단가는 매월 30만원(연 360만원)으로 가정하며,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3. 국비 및 지방비 분담률은 50:50으로 가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청년농어민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u>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농어민기본소득이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청년농어민의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사례를 바탕으로 농어민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u>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여야 함(제4항)</u>	의무규정
2	안 제6조(청년농어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의 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정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u>5년마다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u>	의무규정
3	안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u>청년 인구의 농어촌 정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제1항)</u>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u>청년농어민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되,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음(제2항)</u>	의무규정 의무·재량 규정
4	안 제8조(청년농어민기본소득위원회 구성 등)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u>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농어민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1항)</u>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함(제2항) 1.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청년농어민 단체의 대표 또는 농어민단체의 청년 대표 4. 농어업 관련 기관의 대표 5. 농어업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기본소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9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함(제1항) 1.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농어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정책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4. 청년농어민기본소득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련 부처 사이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u>청년농어민기본소득 정책조정 실무위원회</u> (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둠(제2항)	의무규정
6	안 제11조(청년농어민기본소득 심의위원회)	시·도지사는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청년농어민기본소득 심의위원회</u>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둠(제1항)	의무규정
7	안 제12조(청년농어민기본소득 수급권자의 범위)	<u>청년농어민기본소득 수급권자는 청년농어민으로서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함</u> 다만, <u>청년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신청 기준일로부터 전입신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음</u> (제1항)	의무·재량 규정
8	안 제14조(자료조사 등)	<u>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이하 “수급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서류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지급신청자의 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음</u> (제1항)	재량규정
9	안 제16조(청년농어민기본소득 지급)	<u>청년농어민기본소득은 매월 30만원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함</u>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u>지역화폐</u> 로도 지급할 수 있음(제1항) <u>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청년농어민기본소득의 지급을 결정한 사람에게 청년농어민기본소득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20조에 따라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청년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함</u> . 다만, 청년농어민기본소득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청년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함(제2항)	의무·재량 규정 의무규정
10	안 제17조(청년농어민기본소득의 특례)	이 법에 따라 지급신청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청년농어민기본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1항의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의무규정
11	안 제26조(청년농어민기본소득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u>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청년농어민기본소득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청년농어민기본소득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u> (제1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추계여부								
1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 청년농어민기본소득 비용추계								
7	안 제12조(청년농어민기본소득 수급권자의 범위)										
9	안 제16조(청년농어민기본소득 지급)										
2	안 제6조(청년농어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의 수립 등)	—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립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3	안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실태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음								
4	안 제8조(청년농어민기본소득위원회 구성 등)	—	• 미대상 - 국무총리 소속 청년농어민기본소득위원회 및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정책조정 실무위원회의 민간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은 국무총리실 기본경비에서 충당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시·도별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은 17개 시·도의 기본경비로 충당 가능할 것으로 예상								
5	안 제9조(위원회의 업무)										
6	안 제11조(청년농어민기본소득 심의위원회)										
8	안 제14조(자료조사 등)	—	• 미대상 -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는 현행 사업 실시와 병행하여 조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현행 농어업경영체 등록시 등록조사원 운영 및 관련 정보 관리, 공익직불금(농어업경영체 등록자 대상) 관련 현장점검 등의 사업 수행중 (단위: 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업명</th><th>2023</th><th>2024</th><th>2025</th></tr> </thead> <tbody> <tr> <td>농업경영체등록 (6034-362)</td><td>27,825</td><td>28,979</td><td>29,459</td></tr> </tbody> </table>	사업명	2023	2024	2025	농업경영체등록 (6034-362)	27,825	28,979	29,459
사업명	2023	2024	2025								
농업경영체등록 (6034-362)	27,825	28,979	29,459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추계여부			
			사업명	2023	2024	2025
			-등록조사원 운영	21,396	22,373	22,761
			-등록정보관리	4,803	4,980	5,072
			-정확도관리	1,626	1,626	1,626
			어업경영체 등록 (3440-362)	4,417	4,213	4,315
			-어업경영체 등록	4,117	4,213	4,315
			-어업법인 관리시 스템 구축	300	—	—
			직불제이행점검 (1071-301)	25,054	28,421	29,987
			-현장점검을 위한 조사원 채용·지원	16,637	19,173	19,813
			-드론 및 태블릿을 이용한 현장조사	909	1,006	1,066
			-준수사항 관련 업 무추진 및 부정수 급 방지	7,508	8,182	9,108
			농림축산식품통합 관리망(정보화) (7032-507)	4,195	3,519	3,186
			-농업경영체 지원 사업통합관리시스 템 구축 운영	2,824	2,795	1,36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10	안 제17조(청년농어민기 본소득의 특례)	×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청년농어민기본소득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1항의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청년농어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지급 등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실점에서는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수 및 자격 유지 여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11	안 제26조(청년농어민기 본소득정보시스템의 구 축·운영)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청년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추계여부																																																				
			농어민기본소득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나, 구축 대상 시스템 규모 및 구축·운영·유지·관리 비용 등은 ISP를 거쳐야 파악이 가능하므로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시스템을 구축·운영중이며, 제정안에 따른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수급권자가 농업·어업·양식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농어업경영체 등록 시스템을 일정 부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단위: 백만원) <table> <tr> <th>사업명</th><th>2023</th><th>2024</th><th>2025</th></tr> <tr> <td>농업경영체등록 (6034-362)</td><td>27,825</td><td>28,979</td><td>29,459</td></tr> <tr> <td>-등록조사원 운영</td><td>21,396</td><td>22,373</td><td>22,761</td></tr> <tr> <td>-등록정보관리</td><td>4,803</td><td>4,980</td><td>5,072</td></tr> <tr> <td>-정확도관리</td><td>1,626</td><td>1,626</td><td>1,626</td></tr> <tr> <td>어업경영체 등록 (3440-362)</td><td>4,417</td><td>4,213</td><td>4,315</td></tr> <tr> <td>-어업경영체 등록</td><td>4,117</td><td>4,213</td><td>4,315</td></tr> <tr> <td>-어업법인 관리시스템 구축</td><td>300</td><td>—</td><td>—</td></tr> <tr> <td>농림축산식품통합 관리망(정보화) (7032-507)</td><td>4,195</td><td>3,519</td><td>3,186</td></tr> <tr> <td>-농업경영체 지원 사업통합관리시스 템 구축 운영</td><td>2,824</td><td>2,795</td><td>1,360</td></tr> <tr> <td>수산정보화(정보 화)(3462-505)</td><td>1,559</td><td>1,314</td><td>997</td></tr> <tr> <td>-수산정보통합시스 템 구축 및 운영</td><td>919</td><td>1,314</td><td>997</td></tr> <tr> <td>-수산 ICT융합 지 원사업</td><td>640</td><td>—</td><td>—</td></tr> </tabl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사업명	2023	2024	2025	농업경영체등록 (6034-362)	27,825	28,979	29,459	-등록조사원 운영	21,396	22,373	22,761	-등록정보관리	4,803	4,980	5,072	-정확도관리	1,626	1,626	1,626	어업경영체 등록 (3440-362)	4,417	4,213	4,315	-어업경영체 등록	4,117	4,213	4,315	-어업법인 관리시스템 구축	300	—	—	농림축산식품통합 관리망(정보화) (7032-507)	4,195	3,519	3,186	-농업경영체 지원 사업통합관리시스 템 구축 운영	2,824	2,795	1,360	수산정보화(정보 화)(3462-505)	1,559	1,314	997	-수산정보통합시스 템 구축 및 운영	919	1,314	997	-수산 ICT융합 지 원사업	640	—	—
사업명	2023	2024	2025																																																				
농업경영체등록 (6034-362)	27,825	28,979	29,459																																																				
-등록조사원 운영	21,396	22,373	22,761																																																				
-등록정보관리	4,803	4,980	5,072																																																				
-정확도관리	1,626	1,626	1,626																																																				
어업경영체 등록 (3440-362)	4,417	4,213	4,315																																																				
-어업경영체 등록	4,117	4,213	4,315																																																				
-어업법인 관리시스템 구축	300	—	—																																																				
농림축산식품통합 관리망(정보화) (7032-507)	4,195	3,519	3,186																																																				
-농업경영체 지원 사업통합관리시스 템 구축 운영	2,824	2,795	1,360																																																				
수산정보화(정보 화)(3462-505)	1,559	1,314	997																																																				
-수산정보통합시스 템 구축 및 운영	919	1,314	997																																																				
-수산 ICT융합 지 원사업	640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 제16조제1항¹⁾에 따라 청년농어민기본소득은 매월 30만원(연간 36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 이때, 지급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본 추계에서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함)에 따라 농어업경영체²⁾에 등록한 40세 미만의 농어업인(경영주 및 경영주외 종사자)으로 가정함
 - 제정안 제2조제3호³⁾는 청년농어민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과 어업·양식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40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1) 안 제16조(청년농어민기본소득 지급) ① 청년농어민기본소득은 매월 30만원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청년농어민기본소득의 지급을 결정한 사람에게 청년농어민기본소득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20조에 따라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청년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다만, 청년농어민기본소득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청년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의 구분

<농어업경영체의 구분>

구분		정의
농어업경영체		농업경영체 + 어업경영체
	농업경영체 (임업 포함)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5인 이상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농업인 및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	농업 경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가 설립
어업경영체		어업인 + 어업법인
	어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양식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영어조합법인 + 어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5인 이상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어업인 및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
	어업회사법인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가 설립

자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3)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청년농어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양식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농어민의 범위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인·어업인과 유사하므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서 관리 중인 농어업경영체 등록 통계를 활용함

- 다만, 제정안은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수급대상자인 농업인 및 어업인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농어업법인 종사자의 포함 여부를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농어업법인에 소속된 종사자는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표 2] 제정안에 따른 청년농어민과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인 비교

	제정안에 따른 청년농어민 (안 제2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 (법 제2조)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어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양식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40세 미만의 사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자료: 제정안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제정안 제12조제1항은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수급권자에 대하여 청년농어민으로서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하되,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신청 기준일로부터 전입신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 대한 전입·전출 등 인구의 유입에 대한 통계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동 조항은 본 비용추계 대상에서 고려하지 않음
- 본 추계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농어민기본소득의 총액(기준선)을 비용추계 결과에서 차감하지 않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 중이나, 총 지급액 및 지급대상(개인 또는 가구), 지급시기 등이 상이하여 추계에 필요한 자료 가공에 한계가 있음
 - ※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인 수당 지급현황은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 농어업인 수당 지급현황 참고

- 정부는 2026년부터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⁴⁾이나, 예산액 등 사업의 규모가 확정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본 추계에서는 해당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고려하지 않음
 - 정부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 주민(24만명)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1,703억원을 편성함
- 제정안은 청년농어민기본소득의 지급정지 사유, 수급권의 상실 사유, 환수 사유⁵⁾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자료가 부재하여 대상자 산출이 불가능하므로 비용추계에서 고려하지 않음
 -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 중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자,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자,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지원받는 자 등은 추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현시점에서는 이에 대해 예측하기 곤란하여 대상자 선별에 한계가 있음

4)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7개 군(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을 선정하였음(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 선정, 2025.10.20.)

5) 안 제19조(청년농어민기본소득 지급정지)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청년농어민기본소득의 지급을 정지한다.

1.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되거나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3.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20조(수급권의 상실)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안 제21조(청년농어민기본소득의 환수)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청년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농어민기본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사유로 환수하는 때에는 지급한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2. 제19조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청년농어민기본소득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청년농어민기본소득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 산출

- 최근 5년(2021~2025.8월)간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임업인 및 어업인의 연령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임산물 생산·채취 등 임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 구분없이 ‘농업경영체’로 등록되며, 2019년부터 산림청에서 임업인을 농업인과 별도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기 시작함
 -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 간 중복 등록이 가능하며, 다음 표의 숫자는 각 경영체 간 중복 등록된 사람이 포함됨
 - － 예를 들어 농업인과 임업인, 농업인과 어업인, 임업인과 어업인 간 중복 등록이 가능함

[표 3] 농업경영체(농업·임업) 및 어업경영체 등록 현황: 2021~2025년

(2025년 8월 말 기준, 단위: 명)

소관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 경영체 등록	합계	2,507,670	2,554,638	2,554,935	2,539,258	2,540,252	
			소계	1,762,530	1,811,377	1,822,483	1,823,406	1,824,424
		경영주	20세 미만	34	29	32	32	17
			20~29세	8,225	8,691	8,828	8,867	8,175
			30~39세	36,262	36,237	35,352	35,095	33,929
			40~49세	128,939	127,251	119,606	111,558	104,283
			50~59세	364,387	357,959	349,680	335,642	315,132
			60~69세	582,159	604,604	614,773	618,380	612,051
			70세 이상	642,524	676,606	694,212	713,832	750,837
			경영주 외 농업인	소계	745,140	743,261	732,452	715,852
		20세 미만		243	187	164	132	117
		20~29세		6,368	6,043	5,979	5,469	6,012
		30~39세		17,354	15,631	14,349	13,699	13,320
		40~49세		44,289	41,072	37,613	33,689	32,400
		50~59세		131,075	120,669	112,579	99,508	91,709
		60~69세		272,182	274,901	273,510	267,542	258,487
		70세 이상		273,629	284,758	288,258	295,813	313,781

소관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임업인 (산림청)	합계	13,295	65,073	67,811	69,890	71,481		
		경 영 주	소계	9,462	44,645	46,830	48,755	50,082	
			20세 미만	1	2	1	1	2	
			20~29세	109	261	248	217	238	
			30~39세	279	765	753	764	811	
			40~49세	808	2,637	2,419	2,240	2,343	
			50~59세	2,794	10,141	9,930	9,500	10,045	
			60~69세	3,621	17,249	18,280	19,182	19,860	
			70세 이상	1,850	13,589	15,198	16,851	16,783	
		경 영 주 외 농업인	소계	3,833	20,428	20,981	21,135	21,399	
			20세 미만	-	8	8	6	10	
			20~29세	78	248	231	193	228	
			30~39세	99	398	397	380	402	
			40~49세	257	943	880	797	829	
			50~59세	881	3,527	3,313	2,956	3,124	
			60~69세	1,521	8,271	8,575	8,679	8,924	
		70세 이상	997	7,033	7,577	8,124	7,880		
해양 수산부	어업 경영체 등록	어업인	합계	89,343	92,901	95,424	94,807	93,983	
			경 영 주	소계	74,883	76,986	78,704	77,973	77,414
				20세 미만	3	3	2	1	1
				20~29세	607	612	650	639	560
				30~39세	2,966	2,881	2,801	2,649	2,506
				40~49세	7,780	7,949	7,990	7,869	7,612
				50~59세	15,610	15,328	15,451	14,944	14,111
				60~69세	24,984	25,890	26,868	26,403	25,783
				70세 이상	22,933	24,323	24,942	25,468	26,841
			경 영 주 외 종사자	소계	14,460	15,915	16,720	16,834	16,569
				20세 미만	4	8	4	8	3
				20~29세	319	301	302	265	235
				30~39세	894	834	827	784	697
				40~49세	1,512	1,586	1,617	1,588	1,540
				50~59세	3,521	3,599	3,604	3,380	3,009
				60~69세	5,422	6,326	6,790	6,913	6,744
				70세 이상	2,788	3,261	3,576	3,896	4,341

주: 1.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 간 중복 등록이 가능하며, 표의 숫자는 각 경영체 간 중복 등록된 사람이 포함된 것임

2. 임업인의 경우 2019년 4월부터 산림청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시작하였으며, 2022년 10월 1일부터 임업인에 대한 임업 공익기능직불금 지급제도가 시작됨에 따라 임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가 크게 상승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및 해양수산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제정안에 따른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는 최근 5년(2021~2025.8월)간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임업인 및 어업인 중 40세 미만인 인구수와 그 추이를 바탕으로 추산

○ 최근 5년(2021~2025.8월)간 40세 미만 농업인·임업인·어업인 수의 연평균 감소율 2.08% 산출

- 이때, 청년농어민기본소득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중복 등록된 농업인과 임업인, 농업인과 어업인의 수를 제거함⁶⁾
- 40세 미만의 농업인 및 어업인 중복등록자 수는 데이터가 부재하므로,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협업하여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의 전수자료를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비교하여 중복되는 인원 수를 산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중복등록자 비율을 각 연도 40세 미만의 농업인 수에 곱하여 산출함

※ 2023년 기준 농업인 등록자(2,554,935명) 대비 농어업인 중복등록자(35,516명)의 비율은 1.39%임

[표 4] 최근 5년간 청년농어민 현황: 2021~2025년

(2025년 8월 말 기준, 단위: 명)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감소율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업인 중 40세 미만 농어업인 (경영주 및 경영주의 종사자)	농업인(A)	68,486	66,818	64,704	63,294	61,570	
	임업인(B) ¹⁾	566	1,682	1,638	1,561	1,691	
	- 농업인 및 임업인 중복등록자(C)	230	1,016	982	900	1,000	
	어업인(D)	4,793	4,639	4,586	4,346	4,002	
	- 농업인 및 어업인 중복등록자(E) ²⁾	952 ²⁾	929 ²⁾	900 ²⁾	880 ²⁾	856 ²⁾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 (중복 제거) (F=(A+B+D)-(C+E))		72,663	71,194	69,046	67,421	65,407	2.08%

주: 1) 임업인의 경우 '19년 4월부터 산림청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시작하였으며, 2022년 10월 1일부터 임업인에 대한 임업 공익기능직불금 지급제도가 시작됨에 따라 임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가 크게 상승함

2) 40세 미만의 농업인 및 어업인 중복등록자 수는 데이터가 부재하므로,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 전수자료를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과 비교하여 중복되는 인원 수를 산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중복등록자 비율 1.39%를 각 연도 농업인 수에 곱하여 산출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최근 5년간 40세 미만의 청년농어민 연평균 감소율(2.08%)을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의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를 산출함
 - 이때, 연평균 감소율(2.08%)은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6) 다만, 어업인과 임업인 간 중복자 수는 자료의 한계로 제거하지 못하였으나, 업종 특성을 고려할 때 임업-어업 간 중복종사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표 5]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 산출: 2027~2031년

(단위: 명)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전년도 청년농어민(A, 명)		65,407	64,047	62,715	61,411	60,134	58,884
연평균 감소율(B)	2.08%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C=A×(1-B), 명]	65,407	64,047	62,715	61,411	60,134	58,884	57,660

주: 추계기간 동안 최근 5년(2021~2025.8월)간 40세 미만의 청년농어민 연평균 감소율(2.08%)을 변동 없이 적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지급단가

- 1인당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지급단가는 매월 30만원(연 360만원)으로 가정
 - 제정안은 매월 30만원 이상의 금액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정확한 금액을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제정안에 규정된 하한 금액인 30만원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 이때, 지급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다. 분담률 등

- 국비 및 지방비의 분담률은 50:50으로 가정함
 - 제정안 제3조7)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명시적인 분담률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비 및 지방비의 분담률을 50:50으로 가정함

7)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 추계결과

- 추계 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조 825억원(연평균 2,165억원)으로 추계됨
- (국 비) 5,413억원(연평균 1,083억원)
 - (지방비) 5,413억원(연평균 1,083억원)

[표 6]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명,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 수 (A, 명)	62,715	61,411	60,134	58,884	57,660	—	—
1인당 연간 지급액 (B, 백만원/명)	3.6	3.6	3.6	3.6	3.6	—	—
추가재정소요 (C=A×B, 억원)	2,257	2,210	2,164	2,119	2,075	10,825	2,165
국비 (D=C×50%)	1,129	1,105	1,082	1,060	1,038	5,413	1,083
지방비 (E=C×50%)	1,129	1,105	1,082	1,060	1,038	5,413	1,083

주: 1.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40세 미만의 농업인으로 가정
 2. 1인당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지급단가는 매월 30만원(연 360만원)으로 가정하며,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3. 국비 및 지방비 분담률은 50:50으로 가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하고, 추계가 가능한 조문에 대하여 일정 예산의 편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 수 및 지급단가 등 일정 요인을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 향후 지급대상자 수, 지급단가, 수급 제외 사유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김성원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성원	02-6788-4650	holyone@assembly.go.kr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 농어업인 수당 지급현황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2025년 기준)

구분	지자체	지급 시작	지급대상	지급규모	지급방법
농업인 수당	경기도	'21~	농업인	'21년~: 농업인당 5만원/월 (60만원/년)	지역화폐
	강원도	'21~	농림어가	농가당 70만원/년	지역화폐
	충청북도	'22~	농가	'22년: 농가당 50만원/년 '23~: 농가당 60만원/년	지역화폐
	충청남도	'20~	농업인	'20~'21년: 농가당 80만원/년 '22년~: 1인 농가 80만원/년, 2인 가구 이상 45만원/1인	지역화폐
	전라북도	'20~	농가	농가당 60만원/년	지역화폐
	전라남도	'20~	농가	농가당 60만원/년	지역화폐
	경상북도	'22~	농가	농가당 60만원/년	지역화폐
	경상남도	'22~	농가	농가당 30만원/년 (공동경영주 60만원/년)	지역화폐 또는 농협채움카드 (신용·체크카드)
	제주도	'22~	농업인	농업인당 40만원/년	지역화폐
	울산광역시	'23~	농가	농가당 60만원/년	현금 지급
	광주광역시	'23~	농가	농가당 60만원/년	지역화폐
	세종특별자치시	'23~	농가	농가당 60만원/년	지역화폐
	인천광역시	'24~	농가	농가당 60만원/년	현금 지급
	부산광역시	'25~	농가	농가당 60만원/년	현금 지급
어업인 수당	인천	'24	어가	어가당 60만원/년	현금, 지역화폐 (카드, 상품권 등)
	경기(화성시)	'23	어민	어민당 60만원/년	
	전라북도	'21	어가	어가당 60만원/년	
	전라남도	'20	어가	어가당 60만원/년	
	충청북도	'23	어가	어가당 60만원/년	
	충청남도	'20	어가	1인 어가 80만원/년, 2인 가구 이상 어가 45만원/1인	
	강원도	'21	어가	어가당 70만원/년	
	경상북도	'22	어가	가구당 60만원/년	
	경상남도	'22	어민	경영주당 30만원/년	
	울산	'24	어가	어가당 60만원/년	
	제주도	'22	어민	어민당 40만원/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각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취합)